

2021년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사업소개



# 목 차

I. 협회 소개

II. 사업 안내

III. 사업 신청방법

IV. FAQ(자주 묻는 질문)

V. 기타 지원내용 및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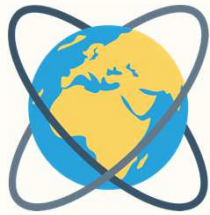


# 1. 협회 소개



## 한국환경산업협회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1조에 따라 설립(2012. 12월)된 법정법인으로,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체  
해외진출지원



국내환경산업  
육성



환경시장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지원



환경전문가양성,  
해외진출  
역량강화교육

## 2. 협회 업무

### 법적 업무

-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받은 업무
-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정관상 업무

-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권익보호, 권익창출 등 지원
-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회원사를 포함한 환경산업체 등에 대한 환경정책·제도교육 및 홍보
- 환경산업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동반성장) 및 컨소시엄 구성 등 연계지원
- 환경기술 지원 및 경영컨설팅, 상담
- 해외 시장개척단 참여활동 제공 및 지원
- 해외공사, 환경전문공사 계약 및 등록·인증, 각종 실적증명 대행 및 확인
- 해외 '환경산업협회'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협력 노력
- 해외 관계 전문가 초청 및 회원사와의 연결·알선
- 환경산업 등에 대한 소식지, 홍보물 등 발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 기타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 3. 가입대상 및 혜택

#### 가입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16조 4에 따른 **환경컨설팅 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 「상법」 제 172조에 따라 설립 등기를 한 기업 및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 가입시 혜택

제공서비스	회원사부담	제공주기	비고
환경산업동향정보	무료	매일	뉴스클리핑 일간 송부
환경산업포럼	무료	연 3~4회	
환경전문가 양성교육	무료	연간 약 10회	
분과위원회	무료	분야별 연 1~2회	컨설팅, 기후대기, 수질, 자원순환 등
민관합동 연찬회	무료	연 1회	
해외전시회 참가	참가비 50% 이내	연 3~5회	
해외교환연수(중국)	왕복 항공료	연 2~3회	해외체재비용 초청국 부담



## 4. 사업추진내용

### 주요사업



#### 환경산업체 역량강화 지원

-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 업사이클링 사업화 지원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환경컨설팅·육성지원사업



#### 국내외 마케팅 지원, 환경시장정보 제공

- 환경산업 통계조사
- 해외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파견
- 환경기술 및 제품 검색 포털 운영
- 해외 유망 환경시장 정보조사

#### 교육서비스



-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해외진출 기술정책실무교육
-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 국내외 환경산업 네트워크 구축



- 한중일 환경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운영
- 해외 환경협력회의 개최
- 환경산업 포럼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 환경산업 옴부즈만 운영 및 제도개선 접수

## II. 사업 안내



# 1. 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적
  -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수행기업'** 으로 선정하고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 사업규모
  - 예산 : 45억원 (**단계별 최대 1~2억원**, 30개사 내외 지원)
  - 사업기간 : 2021.4 ~ 2021. 12 (약 9개월, 평가기간 포함)



단계	수출초보	수출안정	수출고도화
조건	평균 수출액 10억원 미만 중소기업	평균 수출액 10억원~50억원 중소기업	평균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소· <b>중견기업</b>
지원기업수	15개사	10개사	5개사
지원금	최대 1억원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 2. 사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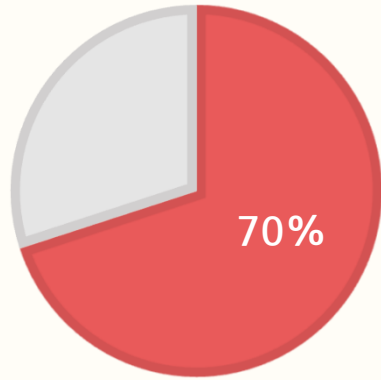
### 주요내용

## 기업 수주 역량강화 및 수출 성과 도출을 위해 해외 사업 전략수립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로 해외진출사업 맞춤형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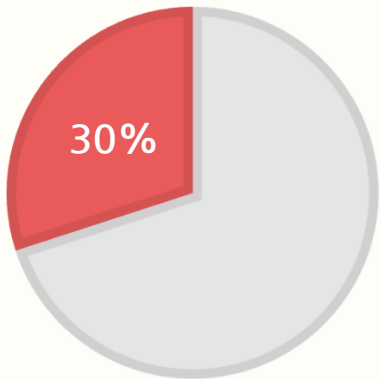
시장확장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홈페이지, 외국어 브로셔, 제품 동영상 제작 등)</li><li>•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li><li>•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li></ul>
현지 진입장벽 해소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li><li>• 목표국 진출 관련 (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li><li>• 현지 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li></ul>
현지 기술실적 강화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지 성능평가 및 제품 시연을 위한 시제품 제작</li><li>• 보유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 성적서 발급 등 성능 평가관련 비용 지원</li><li>• 특허 출원, 인증취득 절차제반 비용 지원 등</li></ul>

### 3. 지원금액 및 사업기간

#### 지원금액



- ✓ 기업당 정부지원금 1~2억원 이내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 ✓ 민간부담금 30%  
민간부담금 내 현금비율 20% 이상

#### 사업기간

# 약 9개월

(협약체결일~2021.12까지)

※ 최종평가기간 포함

#### 지원사업 특징점



- ✓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활용 가능
- ✓ 사업 종료 후 3년간 사후관리

## 4. 사업 변경내용

### [참고] '21년도 주요 변경내용

단계	변경 전 (2014~2020)	변경 후 (2021~)	비고	
지원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 산업체 및 정부정책 유관 사업자 중 중견·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대상확대	
사업기간	2년(1+1년)	1년	최종평가 후 사업유예제도 폐지	
선정기업수	약 15개사	약 30개사	-	
사업단계	단일단계	3단계(수출 초보, 안정, 고도화)	기존참가기업('14~'20)은 안정, 고도화, 중견기업은 고도화만 참가가능	
지원금	최대 2억원	단계별 최대 1~2억원	수출초보 : 최대 1억원 수출안정/고도화 : 최대 2억원	
지원횟수	최대 1회	최대 2회	지원횟수 확대 / 동일단계 중복 지원불가	
평가 기준	선정	(정량평가) 30점(매출액, 부채비율, 수출액) (정성평가) 70점(목표, 성과 창출가능성 등)	(정량평가) 30점(매출액, 신용등급, 수출비중) (정성평가) 현행과 동일	정량평가 기준변경
	중간	중간평가(성공, 보완, 실패)	중간보고(계속, 보완)	사업 반기도래시 보고형식으로 완화
	최종	(정량평가) 40점(수출목표액 달성도 및 목표달성도) (정성평가) 60점(노력, 의지 등)	(정량평가) 30점(수출목표액 달성도 및 전년대비 수출액 상승도) (정성평가) 70점(노력, 의지 등)	수출목표액 달성도 비중 축소 및 노력, 의지, 수행효과 등 종합적 평가
사업비지급	'선금 70 : 잔금 30' 기준 2회 분할 지급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건별 지출승인	구체적인 사항은 선정기업에 추후 공지	

# Ⅲ. 사업신청방법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 1. 사업참여 대상

## 사업참여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2조제3호에 의거한 환경산업체 또는 정부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 국내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기업
- 수출기반 마련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업
-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

## 참여제한대상

①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사업,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사업

②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단,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③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제재 중인 기업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사업, 마스터플랜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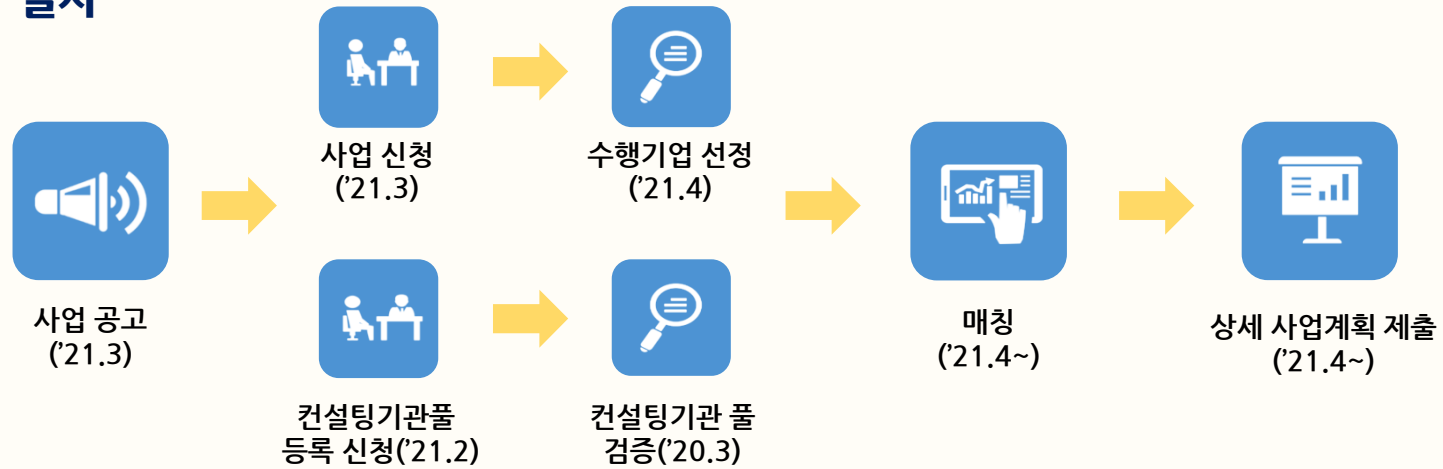
④ 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 지원사업 의무를 불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

⑤ 본 지원사업을 2회 이상 수행한 적이 있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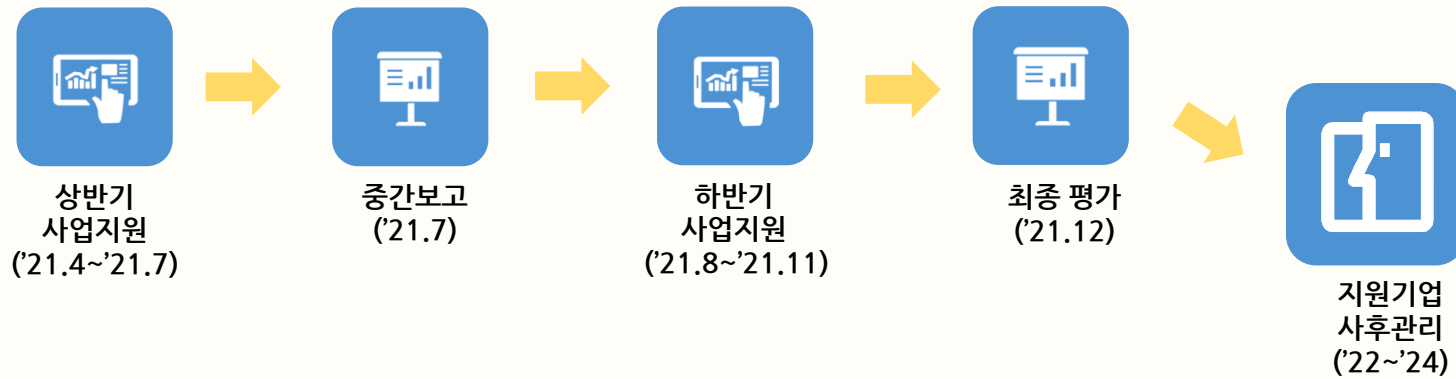


## 2. 전체 일정

### 신청 및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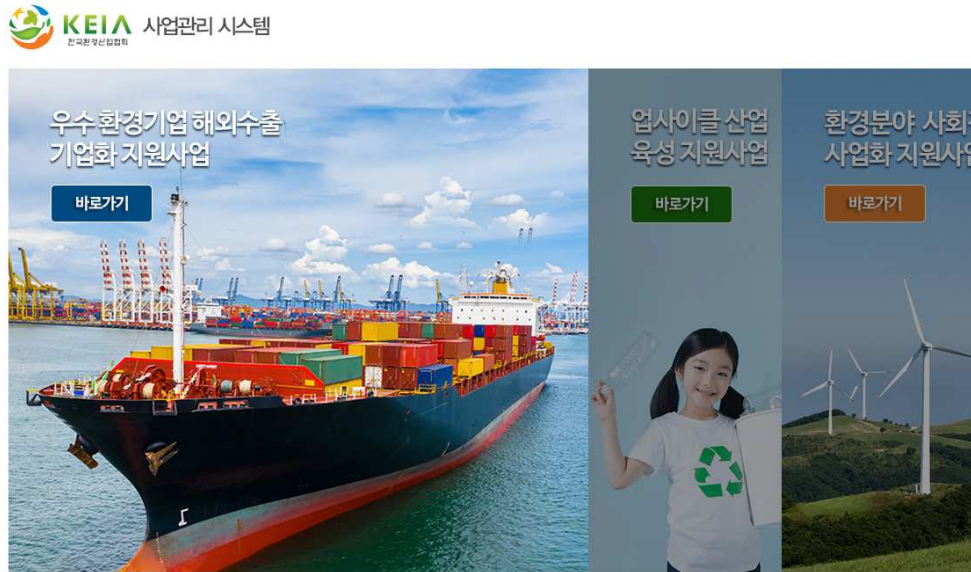


### 선정 이후 추진일정



### 3. 사업신청 방법

#### 사업선정 절차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ge100.kr](http://www.ge100.kr))에서 사업신청

→ 1차 서류검토 및 심사

→ 2차 대면 평가(발표)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개별 공지

★ 2차 대면 평가대상 기업은 아래의 서류 제출 필요

① 발표자료(PPT) 이메일 제출

② 발표영상 녹화본 송부



### 3. 사업신청 방법

#### 필수제출 서류

제출서류	수량
환경기업 신청서(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최근 3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	각 1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각 1부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해당기업)	각 1부
기타 증빙서류 등(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	각 1부

- 재무제표는 2개년('19, '20)에 해당하는 재무제표확인원 혹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출기준 (창업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최근 1개년('20) 재무제표 제출)
- 수출실적증빙서류는 최근 3개년('18~'20)의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원,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외국환 입금증 및 기타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기준 (창업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최근 2개년('19, '20) 수출액 기준, 2년 미만의 경우 최근 1개년('20) 수출액 기준)
-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마감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제출



### 3. 사업신청 방법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필수 제출 서류 누락이 없도록 제출 요망 (특히, 수출실적증빙서류)
2. 참여제한여부 숙지 후 신청
3. 제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며 전담기관은 동의 없이 서류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4. 사업 신청 시 수출목표액을 제시 ('21년 사업기간 수출목표액('21.4~11월, 8개월) 및 '21년도 총 수출목표액 등 제시)
5. 사업비 산정 시 정부지원금은 단계별 최대 1~2억원 안에서 산정하며, 이 값이 총 사업비의 70% 이내가 되도록 구성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이며, 이 중 20% 이상은 현금)

ex. 정부지원금이 2억인 경우

정부지원금(70%)	민간부담금(30%)	총사업비(100%)
2억원	0.86억원 (0.17억원(20%)이상 현금 출자)	2.86억원



## 4. 선정평가



### 선정평가 기준(정량평가)

기준		세부항목			배점
정량평가(30)					
기업역량 (20)	사업실적 (10)	1) 매출액(최근 2년 평균) 200억원 이상			10
		2)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50억원 ~ 200억원 미만			8
		3)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00억원 ~ 150억원 미만			6
		4) 매출액(최근 2년 평균) 50억원 ~ 100억원 미만			4
		5) 매출액(최근 2년 평균) 50억원 미만			2
	안정성 (1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
		A- 미만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A- 미만 BBB- 이상	8
		BBB- 미만 BB- 이상	A3- 미만 B0 이상	BBB- 미만 BB- 이상	6
		BB- 미만 B- 이상	B-	BB- 미만 B- 이상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글로벌시장 지향성 (10)	수출 비중 (10)	1) 수출비중(최근 3년 평균) 40% 이상			10
		2) 수출비중(최근 3년 평균) 30%~40% 미만			8
		3) 수출비중(최근 3년 평균) 20%~30% 미만			6
		4) 수출비중(최근 3년 평균) 10%~20% 미만			4
		5) 수출비중(최근 3년 평균) 10% 미만			2

## 4. 선정평가

### 선정평가 기준(정성평가)

정성평가(70)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20)	사업목표의 적정성	수출목표액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중간목표, 최종 목표의 명확성 및 내용의 차별성	10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보유 역량 대비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사업성과 창출가능성 (20)	사업전략의 적정성	세부 방법, 전략의 합리성 및 효과성	10
	사업계획의 성과연계가능성	현지 수요 및 시장성(성장성), 시장 진입전략 및 역량의 적정성, 사업 세부계획의 성과도출 가능성	10
사업수행 능력(20)	사업추진능력 및 전략체계	사업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경험,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해외 네트워크 확보 실적 등)	10
	사업 관리능력	리스크 대응방안의 구체성,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	10
예산사업비 관리(5)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계상·집행의 합리성	5
성과활용 가능성(5)		후속사업 파급효과, 중장기적 수출 목표 이행가능성 및 컨설팅 활용 계획	5



## 4. 선정평가

### 가·감점 항목

구분	항목	배점	
가점	중소기업(수출고도화 단계만 해당)	2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3점	
	우수기업 포상 (장관 포상 이상, 한국환경산업협회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점	
	전전년 대비 전년기준 신규고용	30% 이상 50% 미만 증가	1점
		50% 이상 증가	2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환경부)을 지원받고 완료된 사업에 연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2점	
	최근 3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 등에서 의무 불이행 또는 제재 중인 기업	-5점	

1. 최대 8점이내 한도
2. 가점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인정
3. 가감점은 정량평가(30점) 점수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5. 사업비 계상기준

구분			내 용	계상 비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 수행기업 재직자가 해당 사업 참여인력 명단에 포함되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현물만 인정)	총 사업비의 40% 이내
경비	국내 여비	국내 여비	- 수행기업 사업참여 인력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제한 없음
	국외 여비	국외 여비	- 수행기업 사업참여 인력의 국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업무 추진비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자문비, 회의비, 원고료, 통역료 - (시장조사비) 시장정보조사·수집비,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사업 관련 시장현황 파악 및 시장 창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 (사업홍보비)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전시 등 사업 관련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유통비) 시제품 및 해외 전시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및 보관료, 포장비 등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유통비용 - (특허출원 및 인·검증비)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및 환경성 등에 대한 특허출원, 인·검증비용(신청·평가 수수료 포함) - (시험분석비) 인·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시험분석비용 - (위탁정산비) 전문 회계정산수수료	
운영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보유 기기장비시설의 구입단가 10%이내 현물계상)	총 사업비의 40% 이내	
	시약·재료 구입비	- 시제품 제작 등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시약·재료구입비(시제품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비중 기보유 재료는 현물, 구매필요 항목은 현금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 외주 제작경비(실제 소요되는 기자재 및 재료비는 현물계상하며,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만 현금계상)		
외주 용역비	외주 용역비	외주 용역비	- 사업비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총 사업비의 30% 이내

# IV . FAQ



## ■ 사업단계별 지원조건이 사업단계별 지원조건이 다른데, 조건이 맞지않는 단계에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최근 3개년 수출액에 따라 지원가능 단계를 (수출 초보, 안정, 고도화) 선택하여 신청하셔야하며(지원 사업 신청서(별지1호)에 명시), 증빙서류 검토결과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류검토단계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 기존에 참가했던 업체인데(‘14~’20)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사업변경 전 지원받았던 기업도 1회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기때문에 ‘21년부터 1회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안정 또는 고도화 단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 환경부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사업,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상용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중 공고마감일까지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환경부 재원의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사업 등에서 제재조치 중인 기업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데 지원이 불가능하나요?

- 네,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 가능합니다.

### 일부 신청서류 중 창업기간에 따라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최근 2년도 재무제표와 최근 3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 등, 창업연수 미만에 따라 증빙이 불가능한 연도가 있는 경우 증빙 가능한 연도의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출한 연도에 대한 평균값으로 평가합니다. 단, 전담기관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서류를 공고마감일 마감시간 내 온라인 접수사이트(ge100.kr)에 업로드하지 못한 경우, 사전검토 단계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신청기업의 책임에 따릅니다. 단, 용량문제로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마감시간 내로 담당자 이메일로(ge100@keia.kr) 제출 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업 모두 발표평가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발표평가는 서류검토 단계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에게는 별도 통지될 예정입니다. 평가대상 기업은 발표용 PT자료와 발표영상 녹화본을 송부해야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평가예정입니다.

##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정부지원금은 지원 단계에 따라 최대 1~2억원이며, 총 사업비의 70%를 한도로 합니다.(중견기업의 경우 50%). 관리지침 별표 3~6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 민감부담금은 어떻게 출자하나요?

- 민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최소 30%로 구성되며, 이 중 현물은 최대 80%로 계상 가능하므로 최소 20%는 현금으로 출자하셔야 합니다. 현물은 인건비, 운영비(기기장비기자재, 시약재료구입, 시작품 제작비)로 계상가능하며, 현금은 추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민간부담금의 현물 중 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40%이내로 제한됩니다. 실제 사업참여 직원의 월평균지급액 $\times$ 참여율 $\times$ 실제 사업참여기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율 합계액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 되오니 참여율 산출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목표액은 어떻게 제시하나요?

- 사업신청시 사업기간 동안의 수출목표액(해당 개월수)과 연간(5년) 목표액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최종평가지 수출목표액 달성도와 수출액 상승률을 사업지침 별표1-1에 따라 평가하므로 적절한 목표액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무 낮은 수출목표액 제시시에 선정되지 않거나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컨설팅기관은 꼭 연계해야하나요?

- 컨설팅기관은 선정평가에서 컨설팅기관에 갈음하는 신청기업 자체의 컨설팅 역량을 보유했다는 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계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컨설팅풀의 컨설팅기관과 함께 참가하셔야 합니다.

# V.기타 지원내용 및 성공사례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 1. 지원사업 성과

## 지원사업 전체 성과

- 사업기간 전체('14~'20년) 총 84개 환경기업 지원
- 사업참가 84개사 지원사업기간 중 5,325.2억원 수출 달성  
(지원예산 164억원 대비 **3,247% 증가!!!**)
- 사업 종료기업 70개사 지원사업 기간 중 평균 70.6억 수출 달성!!

사업연도	지원기업 수	수출성과(억원) *사업종료 시점 기준
2014년	5	163.3
2015년	10	595.3
2016년	15	579.5
2017년	14	679.3
2018년	13	2,765.6
2019년	13	159
2020년	14	383.2
계	84	5,325.2



## 2. 협회 지원사업 안내

### 해외진출 교육지원 및 간담회 개최



- 지원사업 수행 기업 뿐 아니라 지원사업 수행 종료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환경부, 유관기관과 지원사업 수행기업이 함께하여 애로사항 및 제안 사항을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수시)
-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본, 실무 무역 교육과정 개최 (해외 마케팅, 무역실무 등)연 1~2회



## 2. 협회 지원사업 안내

### 해외 전시회 및 국제교류 세미나 참가 지원



- 국내외 유망 전시회 단체참가 및 홍보지원 (상시)
- 환경부, KOTRA,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협회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 모집 및 기업 홍보 시너지 효과 발생



### 3. 기업별 우수 성공사례

#### 2014년 지원기업 A사



- **주요제품**

- 슬러지 농축기/탈수기

- **주요성과**

- 중소기업으로써 참가하기 힘들었던 해외 전시회에 다수 참여하여, 해외 발주처 창출할 수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해외영업을 추진하여 해외 8개국 13건의 해외수출 달성

- 유럽 CE인증 획득, 중국특허 등록을 통해 수출 교두보 마련

- 지원사업 이후 사업이전 대비 2배 이상의 수출성과를 창출하는 수출형 기업으로 발돋움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액	50만 달러	83만 달러	150만 달러	100만 달러	120만 달러

### 3. 기업별 우수 성공사례

#### 2015년 지원기업 B사



- **주요제품**

- VOC처리, 설비

- **주요성과**

- 지원사업추진 이전 중국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기존 수출국 강화뿐 아니라 미국, 대만, 인도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 도모
- 지원사업과 함께 추진한 중국 상표 등록을 완료하여 중국시장내 브랜드 홍보에 활용
- 지원사업 이전 크게 성장한 기업 수출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해외영업 발판이 됨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액	126만 달러	605만 달러	287만 달러	342만 달러	450만 달러

### 3. 기업별 우수 성공사례

#### 2016년 지원기업 C사



- **주요제품**

-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폐기물 수거관리 솔루션

- **주요성과**

- 지원사업 추진 이전 수요기반의 제품개발 및 판매량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원사업을 통하여 빠른 기술개발을 진행,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하여 수출성과 달성
- 컨설팅을 통하여 미국시장 진출 시 필요한 현지 법인 설립에 컨설턴트 및 전문가를 활용
- 사업기간 내 여러 나라의 전시회 참가를 통해 직수출 판로 확대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액	-만 달러	5만 달러	59만 달러	30만 달러	131만 달러

### 3. 기업별 우수 성공사례

#### 2017년 지원기업 D사



- **주요제품**

- 전기하전식 슬러지 탈수기

- **주요성과**

- 지원사업을 통해 현지요구조건에 맞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현지 시연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지 수출실적 달성
- 직접 현지 바이어에게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출장기회 마련으로 해외영업 활동 증대
-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사업 이전 6년간의 수출액을 능가하는 수출성과 달성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액	135만 달러	35만 달러	84만 달러	361만 달러

### 3. 기업별 우수 성공사례

#### 2018년 지원기업 E사



- **주요제품**

- 선박용 탈질/탈황 설비

- **주요성과**

- 기존 수출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조선산업의 불경기와 신규수출품의 성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사업 수행
-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전시회 및 홍보자료 동영상 제작 등 공격적인 해외영업을 추진하여 1차년도 1,4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 달성
- 수출성과 이외에도 지속적인 수주성공으로 인해 수출규모를 급상승 시켰으며 안정적인 수출 활로 개척에 성공

연도	2017년(지원이전)	2018년	2019년
수출액	0억원	291억원	2,092억원

### 3. 기업별 우수 성공사례

#### 2018년 지원기업 F사



- **주요제품**
  - 산업용 집진필터
- **주요성과**
  -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설치(TEST-BED)를 통한 운영 데이터 산출 및 수요처 추천서 취득 및 중국, 사우디 네트워크 확대
  - 기존 수출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수출액 증대를 도모하여,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 목적과 부합하는 우수사례
  - 수출역량이 갖춰진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성과 확대에 성공

연도	2017년(지원이전)	2018년	2019년
수출액	3억원	27억원	48.9억

### 3. 기업별 우수 성공사례

#### 2019년 지원기업 G사



#### 주요제품

- 지하수 상부 보호공 및 관측시스템

#### 주요성과

- 페루 전시회 1건 참가, 바이어 발굴 및 미팅 33건, 페루 현지 공영방송 1건 게재 등
- 국내 특허출원 및 시제품 제작으로 현지 테스트베드 시연 등 수출영업망 확대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환경산업체의 수출기반 마련으로 해외진출 불모지인 페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연도	2018년(지원이전)	2019년	2020년
수출액	1.5억원	0.57억원	19.9억

## 문의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9**



 KEIA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협회  
**02-6933-9519  
/9515**

## 한국환경산업협회 약도

